국가기술자격

자동차정비 종목 실기시험 전조등 측정 과제 안내

❑ 대상종목

○ 자동차정비기능장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자동차정비기능사

❑ 작업형 실기시험 전조등(광도, 광축) 측정 과제 시행 안내

○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15] 개정에 따라 실기시험 "전조등 측정" 과제에서 광도 및 광축의 기준 값이 변경되어야 하지만,

계도기간(2020.1.1. ~ 2020.12.31) 동안 기존 법령의 "자동차검사 기준 및 방법"에 따라 자동차정비 실기시험 시행

○ 실기시험 전조등 측정 과제 답안 작성 시 기준 값은 개정 전 기존 광도 · 광축 값을 기입 (※ 현행과 동일)

○ 실기시험 공개문제 검색안내

큐넷(www.q-net.or.kr) → 고객지원 → 자료실 → 공개문제 → 종목검색

※ 답안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❑ 관련 법령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)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8. 20] [국토교통부령 제647호, 2019. 8. 20, 일부개정]

부 칙 <제620호, 2019. 4. 23.>

제2조(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)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 제2호가목18) 및 제2호나목18)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5]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